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961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율 상한 인상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4
다. 검토의견	7
라. 관계 기관 의견	11

I. 개요

1.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96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12.

(3) 회 부 일 : 2024. 9.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약 31만명에 대하여 1인당 연평균 52만 1천원이 지원되었음.

그런데 영세한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대비를 도우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율 상한 인상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율의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사업장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거나 제9조 각 호의 어느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 ----- ----- ----- ----- -----70의-----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 -----.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 ----- ----- -----

현행	개정안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에게는 제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 ----- ----- -----70의----- -----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50”을 “70”으로 한다.

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1) 근거 규정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한시적 특례규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¹⁾,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²⁾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³⁾ 등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음.

(2) 연혁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1995년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서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하면서,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농어민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시적 지원제도로 도입되었음.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업인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補填)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가. 농림어업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

- 이후 지원기한 연장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보건복지부 및 농림부(現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농어민 연금보험료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이루어졌음.
- 2007년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금보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2011년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서 사업장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원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음.
- 이후 2014년, 2020년, 2024년에 각각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으로써 지원기한을 연장하였고, 현행법에 따르면 2031년 12월 31일에 지원이 종료될 예정임.

(3) 지원 현황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⁴⁾⁵⁾.

4)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농어업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함.

- 기준소득금액⁶⁾(103만원) 이하: 월 연금보험료의 50% 정률 지원
- 기준소득금액(103만원) 초과: 기준소득금액 보험료의 50% 정액('24년 최대 46,350원) 지원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2023년 기준 월평균 29만 4천명이며,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총 1,493억 2,000만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됨.⁷⁾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결산 현황>

구분	'21결산	'22결산	'23결산	'24예산	'25예산안
지원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103만원		
지원 사업비(억원)	1,687	1,743	1,696	1,493	1,483
월평균 지원 대상자(천명)	326	311	294	282 (추정)	275 (추정)

자료: 보건복지부

농어업인인지를 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5) 농어업인의 범위 관련 소득 및 재산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2호] 제2조(소득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연 6,000만원을 말한다.

제3조(재산 기준) 영 제57조제3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12억원을 말한다.

6)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0호)

(‘06) 48만원 → (‘07) 52만원 → (‘08) 62만원 → (‘09) 73만원 → (‘10~‘13) 79만원 → (‘14) 85만원 → (‘15~‘18) 91만원
→ (‘19~‘20) 97만원 → (‘21~‘22) 100만원 → (‘23~) 103만원

7)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사업코드: 4135-366)

다. 검토의견

□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의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되, 지원대상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의 상한을 상향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게 되면,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 및 가입기간 증대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런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2,127억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되어, 현행 지원 비율의 상한(50%)이 유지될 때보다 연평균 약 654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단위: 명, 원, 억원)

구분	'25	'26	'27	'28	'29	합계	평균
개정안(70%)에 따른 재정소요(A)	2,261	2,192	2,124	2,060	1,997	10,633	2,127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초과	810	781	753	727	701	3,771	755
월평균대상자	104,004	100,323	96,773	93,348	90,045	-	-
지원단가	64,890	64,890	64,890	64,890	64,890	-	-
기준소득월액 103만원 이하	1,451	1,411	1,371	1,333	1,296	6,862	1,372
월평균대상자	197,539	189,832	182,425	175,307	168,467	-	-
지원단가	61,208	61,913	62,626	63,347	64,076	-	-

구분	'25	'26	'27	'28	'29	합계	평균
현행 50% 적용 시 재정소요(B)	1,578	1,524	1,471	1,421	1,372	7,366	1,473
추가재정소요 (A-B)	683	668	653	639	625	3,268	654

주: 지원 비율이 50%(현행)일 때의 재정소요(B)는 지원기한을 7년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신성범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8)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 다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재원인 농어촌특별세의 세입 규모는 최근 10년간 2019년 이전까지는 3~4조원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이후 주식거래 활성화로 증권거래액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6~7조원대까지 증가⁸⁾하여 동 사업의 재원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10년간 농어촌특별세 징수액 및 예산(안) 현황 >

(단위: 억원)

구분	'16년 결산	'17년 결산	'18년 결산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결산	'22년 결산	'23년 결산	'24년 예산	'25년 예산안
징수액	36,370	38,388	44,217	39,211	62,602	89,000	70,131	65,628	76,199	74,153
(4개년 평균) 3조 9,547억원					(4개년 평균) 7조 1,840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또한, 인구·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농어업인의 수가 2020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추가 재정 소요를 완화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 농가 및 농가인구(2019~2023년) >

(단위: 천 가구, 천명, %, %p)

구 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 감	
						B-A	%
농 가	1,007	1,035	1,031	1,023	999	△23.8	△2.3
농가 비율 ^주	5.0	5.0	4.8	4.7	4.6	△0.2	-
농가인구	2,245	2,314	2,215	2,166	2,089	△76.8	△3.5
남 자	1,100	1,153	1,100	1,069	1,025	△44.5	△4.2
여 자	1,145	1,161	1,115	1,096	1,064	△32.3	△2.9
농가인구 비율 ^주	4.3	4.5	4.3	4.2	4.0	△0.2	-

주: 총가구 및 총인구에 대한 농가 및 농가 인구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2024), 2023년 농림어업조사

< 어가 및 어가인구(2019~2023년) >

(단위: 천 가구, 천명, %, %p)

구 분	2019	2020	2021	2022(A)	2023(B)	증 감	
						B-A	%
어 가	50.9	43.1	43.3	42.5	41.8	△0.8	△1.8
어가 비율 ^주	0.3	0.2	0.2	0.2	0.2	-	-
어가인구	113.9	97.1	93.8	90.8	87.1	△3.7	△4.1
남 자	56.3	49.7	47.1	45.6	43.7	△1.9	△4.1
여 자	57.6	47.3	46.7	45.2	43.4	△1.8	△4.0
어가인구 비율 ^주	0.2	0.2	0.2	0.2	0.2	-	-

주: 총가구 및 총인구에 대한 어가 및 어가 인구의 비율임

자료: 통계청(2024), 2023년 농림어업조사

□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는 2024년 9월 「국민연금법」이 법률 제 20447호로 공포·시행되면서,

동 개정안의 개정 대상인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가 각각 개정된바, 이를 반영하여 개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문 수정안 >

개 정 안	수 정 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u>일부개정법률</u> 및 <u>법률 제16867호</u>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50의”를 “70의”로, “대통령령으로”를 “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 ----- ----- <u>일부개정법률</u> , <u>법률 제16867호</u>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u>법률 제20447호</u> ----- ----- -----.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242호 국민연금법 <u>일부개정법률</u> 및 <u>법률 제16867호</u>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7조 중 “50의”를 “70의”로, “대통령령으로”를 “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 ----- <u>일부개정법률</u> , <u>법률 제16867호</u>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및 <u>법률 제20447호</u> ----- ----- -----.

라.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농어업인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타 취약계층 지원 수준*과의 형평성 및 추가재정소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저소득 지역가입자(50%, 12개월간), 저소득 사업장가입자(80%, 36개월간) 등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